

# 전기 Q&A



## ■ 서지보호장치(SPD)에 대한 규정

관련조항 \_ 판단기준 제18조

**Q1.** 서지보호장치(SPD)에 대한 규정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몇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까? SPD 설치가 의무규정인가요?

**A1.** 서지보호장치(SPD)에 대한 내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조(접지공사의 종류) 제7항에 명시되어 있으며, 통합접지공사를 할 경우 SPD설치는 의무사항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동 판단기준 제18조 제7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■ 전선 및 케이블의 종류

관련조항 \_ 판단기준 제19조

**Q2.** 변경된 내선규정을 보면 삭제된 전선 및 케이블이 상당 수 있습니다. IV같은 경우 SNR로 변경하여 사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GV같이 삭제된 경우에는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?

**A2.** 질의하신 IV(600V 비닐절연전선 KS C 3302)는 국제표준(IEC)도입으로 2006. 12. 1 KS에서 폐지되어 KS C IEC 60227-3(배선용 비닐절연전선)로 대체되었으며, GV(접지용 비닐절연전선) 대체용으로 KS C IEC 60227-3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조제1항에 표 19-1에서 정한 굵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KEA